



미국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지원제도

김 규 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미국에서 교육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학교의 설립과 교육과정의 개발, 학생모집과 졸업의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것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연방정부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교육재정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균등과 교육 수월성의 증진이라는 연방정부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50년 넘게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과 학생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04학년도에 고등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과 가정을 위해 810억 불을 지원했는데, 올해의 경우 1,700만 명에 이르는 고등교육기관 학생들 중 거의 2/3인 1,010만 명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¹⁾

I. 대학 학자금지원제도 : 목적, 자격, 절차

미국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지원제도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및 대출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기초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학문적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켜 주고, 그들이 다니고자 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학생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자금지원제도의 행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은 개별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가지고 학생들은 연방정부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학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1) 이하의 내용은 미국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가 2005년 4월에 발간한 『What Every Student Should Know About Federal Aid』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다.

학생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²⁾ 이 중에서 특이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적 필요조건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개념과는 의미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연간 소득 얼마 이하라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반해, 재정적 필요조건은 대학재학에 드는 비용을 전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때 대학재학 비용에는 등록금이나 수업료만이 아니라 도서비, 교통비, 기숙사비 등 대학교육을 받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상당한 액수가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비용은 대학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³⁾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수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정이 재정적 필요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가정과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것은 대학교육 비용 중에서 가정이 담당할 수 있는 교육비용(EFC :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EFC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학자금 지원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⁴⁾ 이런 점에서 EFC의 산출은 학자금 지원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이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연방학생지원신청서(FAFSA :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이다. 이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통해 연방정부는 사회안전청 등 산하 여러 정부부처의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부모와 학생의 재정 상태를 검토하게 되고, 그 과정은 연방정부의 중앙처리시스템에 의해서 수행된다. FAFSA의 검토 결과 EFC가 대학교육 경비보다 적을 경우, 학생은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II. 학자금의 종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의 종류는 크게 지원금(grants), 근로장학금(federal work-study), 융자금(loans)으로 구분된다. 지원금은 펠 지원금(Pell grants)과 연방보충교육기

- 2)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고등학교 졸업증서나 그와 유사한 자격증(예 : GED)이 있어야 한다. ② 연방정부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학위 프로그램이나 학위와 관련 없는 강좌 프로그램에 입학 또는 등록해야 한다. ③ 대학에서 인정하는 '만족할만한 학문적 진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④ 다른 대출금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연방정부의 학생지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⑤ 남자의 경우 대체병역요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⑥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야 하고, 만약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명령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⑦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 소유자여야 한다. ⑧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한다.
- 3) 2년제인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가 가장 학비가 저렴하여 3,000달러 정도인데 반해 일부 대규모 사립대학의 경우 기숙사비를 포함하여 4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4~2005학년도를 기준으로 시카고대학(40,353달러), 코넬대학(40,049달러) 등이 4만 달러가 넘고 있으며, 브라운대학(39,808달러), 카네기멜론대학(39,589달러), 프린스턴대학(38,297달러), 예일대학(38,850달러) 등의 등록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EFC는 고정된 숫자이므로 학비가 비싸면 학자금 보조도 많아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학비 때문에 사립대학을 기피하고 주립대학에 갈 이유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회지원금(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s)이 있으며, 이들 지원금은 나중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무상 장학금으로 학부생에게만 지급된다.

펠 지원금은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로드아일랜드주의 전 상원의원인 Claiborne Pell의 이름을 딴 것으로, 연방법에 의하면 FAFSA를 제출한 학생 중 EFC가 가장 낮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자격이 부여된다. 펠 지원금은 자격이 주어지는 학생들에게 모두 주어지지만, 그 액수는 학생 부모의 경제적 상태와 대학재학 형태(전일제 등록인지 아니면 시간제 등록인지), 그리고 연방 예산 배정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매년 53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펠 지원금은 2004~2005학년도에 의회로부터 12억 불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당 400불에서 4,050불, 평균적으로 2,469불 정도가 지급되었다.

연방보충교육회지원금은 펠 지원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특별한 재정적 요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학부 학생들에게 보충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특별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불되는 금액은 100불에서 4,000불 정도인데, 이것은 학생의 재정적 요구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2004~2005학년도에는 120만 명의 학생이 평균 765불의 보충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학금은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대학수학의 최소 경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

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임금이 지급된다. 학생들이 담당하게 되는 일은 학사 프로그램 운영 업무나 지역사회의 봉사업무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2004년도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평균 1,450불의 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금 중 최소한 7%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융자금은 연방정부의 학자금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2004~2005학년도에는 620만 명의 학생에게 410억 불의 융자금이 지원되었다. 연방정부의 융자금 프로그램은 1965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00학년도까지 최소한 12,600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3,770억 불 이상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의 융자금 종류와 각 융자금별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융자금이 대출되는 형식에 따른 간접융자와 직접융자 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연방가족교육융자금(FFEL :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으로 불리는 간접융자방식은 연방정부가 민간대출기관(금융기관이나 신용조합 등)에 보조금을 주어 대학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학생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학생에게 지급되는 융자금이 민간대출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융자금을 상환하거나 융자금 체납 시 이를 징수하는 것은 민간대출기관이 맡게 된다.

이와는 달리 보통 Direct Loan(DL)이라고 불리는 직접융자방식은 연방정부가 대출금을 학생에게 직접 대출해준다. 이렇게 받은 융자

금은 대출받은 사람이 졸업 후에 연방정부에 상환하게 되며, 만약 대출금이 제때에 상환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대출금 징수 노력을 담당하게 된다.

Ⅲ. 용자금의 종류와 지원 내용

1. 연방 퍼킨스 용자금(Federal Perkins Loans)

연방 퍼킨스 용자금은 켄터키주의 Carl Perkins 전의원의 이름을 딴 것으로 대학들로 하여금 특별한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용자금액은 학생의 재정지원 필요 정도와 학생이 다른 재정지원 출처로부터 받는 지원 금액, 그리고 대학 자체적으로 확보한 학자금 지원 기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 대출금에는 법률로 정한 이율(5%)이 있고,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이용가능하다. 학부생의 경우 연간 4,000불까지 빌릴 수 있고, 대학원생은 6,000불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학교를 졸업한 후 9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작되며, 대학재학기간 중의 이자는 면제된다.

연방정부는 매년 별도의 추가적인 퍼킨스 기금을 이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배분해주고 있는데⁵⁾, 이 기금은 주로 퍼킨스 용자금이 취소되어지는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용도로 이용된다. 여기서 용자금이 취소된다는 것은 대출받은 용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연방정부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⁶⁾ 용자금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취소된 금액이 2004학년도에 약 6,700만 불에 이르고 있는데, 이 금액은 결국 추가 퍼킨스 기금으로 대체되게 된다.

2. 스탠포드 용자금(Stafford Loans)

이 용자금은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하는 고등 교육 프로그램에 주당 12시간 이상 등록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용가능하다. 전자는 보조(subsidized) 용자금, 후자는 비보조(unsubsidized) 용자금으로 불린다. 양자 간의 차이는 용자에 따른 대학재학기간 중 이자를 부과하는지의 여부이다. 전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후자는 부과된다.

학생들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학생의 가정 의존 여부(가정에 의존적이나 아니면 독립적이나)와 학년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독립적 상태의 학생들이 의존적 상태의 학생들보다 4,000~5,000불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이 더 받게 되는 대출금은 대학재학기간 중의 이자를 부담하는 비보조 용자금이다.

대학원생은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이 연간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18,500불이며, 이중 보조 용자금

5) 2004학년도에는 약 1억 불 정도의 추가 퍼킨스 기금이 배부되었다.

6) 연방정부는 퍼킨스 용자금을 빌린 학생들이 특수한 공공서비스활동 - 예를 들면, Head Start 프로그램이나, 저수입가정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법률로 강제되는 업무에 전일제로 참여하는 것, 보육업무 등 -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용자금 상환을 취소시켜주고 있다.

“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의 종류는 크게 지원금(grants),
근로장학금(federal work-study), 융자금(loans)으로 구분된다.
이들 지원금은 나중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무상 장학금으로 학부생에게만
지급되고, 근로장학금은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대학수학의 최소 경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융자금은 연방정부의 학자금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2004~2005학년도에는
620만 명의 학생에게 410억 불의 융자금이 지원되었다.

”

은 8,500불이고, 나머지 10,000불은 비보조
융자금이다.⁷⁾

연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외에 누
적한도도 있다. 의존적 학부생은 전체 교육기
간 중에 23,000불까지만 빌릴 수 있고, 독립
적 학부생은 46,000불까지 빌릴 수 있는데,
이 중 보조융자금은 23,000불이고 나머지는
비보조융자금이다. 대학원생은 학부기간을 포
함하여 전체 교육기간 중 138,500불까지 빌릴
수 있으며, 이 중 보조 융자금 한도액은
65,000불이다.

스태포드 융자금의 이율은 변동금리로 91일
간의 재무성 발행 단기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학생이 학업기간 중에 있는지 아니면 졸업
을 하여 상환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차등 적용
된다. 즉,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91일간의 재무
성 발행 단기채권금리에 1.7%가 가산된 금액

의 이자가 부과되며, 이 이자는 보조 융자금으
로 받은 학생들의 경우 최소한 반일제로 학교
에 등록해있는 동안에는 정부가 대신 지급해준
다. 그러나 비보조 융자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생에게 부과된다. 이와는 달리 학교 졸업 후
융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91일간 재무성 발행
단기채권 금리에 2.3%가 가산된 이자를 지불
하게 된다. 양자 모두의 이율 상한은 8.25%이
며, 이 이율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연방정
부가 해당 금액을 보조하게 된다.

융자금 상환은 학생이 반일제 이하로 등록이
떨어지거나 학교를 중퇴 또는 졸업한 이후 6개
월부터 시작된다. 대출 이자는 원금 상환이 시
작될 때부터 부과되지만, 비보조 융자금을 대
출받은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 후 30일부터 대
출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7)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어떤 학생도 그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공식적인 수업경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는
없다.

〈표 1〉 연방정부의 스탠포드 용자금 연간 대출 한도(학부생 기준)

학년	의존적 상태의 학생	독립적 상태의 학생
1학년	\$2,625	\$6,625
2학년	\$3,500	\$7,500
3학년 이상	\$5,500	\$10,500

* 자료 출처 : ACE(2005), What Every Student Should Know About Federal Aid, p.12

3. 학부모 용자금

이 용자금은 신용상태가 불리한 학부모에게 학부생의 교육비용을 위해 대출해주는 연방정부의 용자 프로그램이다. 보통 PLUS 용자금(parent loans for undergraduate students)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직접용자방식과 간접용자방식 모두 가능하며 조건과 혜택도 동일하다. PLUS 대출자에게는 4%의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대출업무를 대행해주는 민간대출기관들이 대출실적을 위해 수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다니는 대학의 수업비용까지 빌릴 수 있지만, 학생이 이미 다른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감액되어 대출받게 된다. PLUS 용자는 매년 7월 1일 바뀌게 되는 변동이율에 적용을 받게 되며, 이율은 재무성발행 91일간 단기채권금리에 3.1%를 가산한 것으로 9%가 넘지는 않도록 하고 있다. 이자는 용자금이 지불되고 난 날로부터 부과되고, 상환은 용자금 지불 후 60일부터 시작된다.

IV. 용자금 상환 방법

용자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이중 대출자들이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표준상환(standard repayment)으로⁸⁾ 이것은 10년에 걸쳐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간접용자방식으로 30,000불 이상 되는 용자금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용자금을 25년까지 연장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장상환(extended repayment) 방법이 가능하다. 대출자의 소득정도를 고려하여 마련되는 누진상환(graduated repayment)은 용자금 상환이 시작되는 초기단계에서는 보다 적게 상환하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용자금의 금액을 늘려나가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직접용자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소득연계(income-contingent)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연간 소득, 가족 수, 용자금 규모에 따라 월별 상환액을 결정하게 된다.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상환 금액도 거기에 맞추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25년 이후에 남은 용자금 잔액은 면제되고, 대신 면제된 금액에 대한 세금만이 부

8) 대출자의 약 85%가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된다. 간접융자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월 상환액이 결정되는 소득고려(income-sensitive) 상환 방법이 선택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직접융자 방식의 소득연계 상환 방법과 달리 남은 융자 금액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다. 따라서 전체 융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무한정 이어지게 된다.

특별한 경우 대출자는 융자금에 대해 대출 연기 또는 보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학교에 계속 있게 되는 경우나 '경제적 곤란'에 직면해 있는 경우, 전일제 직업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이 연기될 수 있다. 연기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 보조 융자금을 받은 대출자는 연기되는 기간의 대출이자가 면제되지만 비보조 융자금을 받은 대출자에게는 연기되는 기간동안의 대출이자가 부과된다.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융자금 연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융자금 보류가 인정될 수 있다. 이것은 융자금 상환기간의 일시적인 연장이나 재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되게 되는 이자는 대출자가 부담하게 된다. 의료실습중기간에 있거나 군복무 프로그램에 있는 대출자에게는 이러한 보류가 종종 허락된다. 사망이나 완전 무능력 상태와 같이 대출자가 처한 몇몇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이 전액 취소되어지기도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학교기간 중에 받은 여러 서로 다른 융자금을 매월 1차례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단일한 대출금으로 통합시켜 주는 통합 융자(consolidation loan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통합되어지는 융자금의 각각의 이자율 평균치에 의

해서 결정된다. 통합융자제도를 통해 대출자는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융자금 통합은 한 번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V. 기타 학자금 지원 관련 제도

연방정부는 직접적인 학자금 지원제도 외에 학생과 가정의 대학교육비용 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간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세금과 관련한 사항이 많으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불 수업료와 대학저축 플랜

정부는 가정으로 하여금 대학비용에 필요한 돈을 예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내국세법의 529절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529플랜'이라고 불리며, 선불수업료(prepaid tuition plan)와 대학저축(college savings plan)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선불수업료는 가정으로 하여금 미래의 대학교육을 위해 현재의 이율로 수업료를 미리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저축은 정부와 투자회사 간 계약을 통해 가정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교육비용에 소용되는 비용을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된 금액 전부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2. 희망과 평생학습 세금공제

1997년에 의회는 고등교육 수업료 비용을 위한 두 가지 세금공제 제도-희망 세금공제

(hope tax credit)와 평생학습 세금공제 (lifetime learning tax credit) -를 마련하였다. 이들 세금공제는 연방소득세에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희망 세금공제는 수업료에 대한 세금공제로 공제금액은 1인당 1,500불까지이며, 대학 1, 2학년 때까지만 해당된다. 평생학습 세금공제는 학부과정을 이수하거나 직업기술 습득·개발시키기 위한 대학원과정을 이수하도록 돕기 위해 수업료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2002년 이후 지급된 비용을 보면 납세자당 수업료의 10,000불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세금공제 혜택은 소득금액이 연간 40,000불(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80,000불)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차 줄어들어 50,000불(부부합산인 경우에는 100,000불)이 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수업료 감축

이것은 희망과 평생학습 세금공제를 혜택 자격이 없는 가정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수업료 경감책으로 2001년에 의회가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이 65,000불(부부 합산으로는 130,000불) 이하의 가정에게 2002년과 2003년에는 연간 3,000불이, 2004년과 2005년에는 4,000불이 감액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의회의 추가적인 결의가 없으면 200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대출 이자의 감액

1997년에 의회는 교육비 융자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융자금에 따른 이자를 감액시켜주

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감액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0불이며, 이것은 2001년 '경제성장 과 세금경감법 (EGTRA :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Act)'에 의해 이자가 대출금의 첫 5년(60개월)간에만 감액되어진다는 요구사항이 삭제됨으로 대출 이자의 감액 혜택이 확대되었다.

5. 고용자제공 교육비 지원

내국세법 127항은 고용인으로 하여금 세금으로 면제되는 교육지원금을 고용주로부터 연간 5,250불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만기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재인준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난 2001년의 EGTRA에 의해서 연장된 상태에 있고, 추가적인 인준이 없으면 2011년에 만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용자제공 교육비 지원은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도 이용가능하다.

6. 교육저축계좌

1997년에 납세자 감면법(taxpayer relief act)이 제정됨으로 18세 이전의 자녀들이 고등교육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세금면제를 해주어 연간 500불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개인연금계좌(Education IRAs)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2001년에 Coverdell 교육저축계좌(ESAs : Education Savings Accounts)로 명칭이 바뀌었고, 연간 세금 면제 한도 금액도 2,000불로 증가되었다. 이 사업은 의회의 추가적인 결의가 없는 한 2011년에 종료되게 된다. ■